
2024년 국가유산주간 사업 민간위탁 과업내용서

2024. 2.



문화재청

2024년 국가유산주간 사업 민간위탁 과업내용서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국가유산주간(Korean Heritage Weeks) 사업

2. 사업목적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집중 운영하는 지역유산축전을 개최하여 활용사업 인지도 제고에 기여

3. 위탁기간 : 계약일 ~ '24. 12. 31.

4. 사업내용

○ 연도별 소(小)주제 제안

-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과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주제 제안

* 예시 : 유산과 일상의 기억, 모두를 위한 유산, 숨겨진 유산 등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둘러보기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참여를 희망하는 타 활용사업을 아우르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본 행사기간(예정) : '24. 10. 14. - '24. 10. 27.

- 국가유산 활용사업 참여 인증 이벤트 진행(예 : 전자스탬프 투어 등)
- 관련 홈페이지 운영, 선포식 개최, 홍보(예 : BI, 슬로건 등) 방안 포함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둘러보기 부대행사

- 예 : 컨퍼런스, 라이브방송, 국가유산 활용사업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5. 사업비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 일반지침

1. 과업내용의 해석

- 수탁기관은 과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약정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상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사업 추진

- 수탁기관은 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문화재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에 따른 행정조치 등 문화재청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위탁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

여는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위탁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위탁기관은 참여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비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절차

- 본 위탁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문화재청에 양도한다.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수탁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 수탁기관은 본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각종 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를 활용할 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외부자료의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수탁기관은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대상기관 시설물 및 문화유산의 훼손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 제출

- 수탁기관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총평, 개선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홍보 실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문화재청의 보완·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지도·감독

- 문화재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문화재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등

-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의 의무는 수탁기관에게 있다.
-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청이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를 문화재청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위탁약정의 해지

- 문화재청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위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수탁자가 사업기간 중 관련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 원가업체를 지정하여 원가정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 예산은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수탁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의 사업 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단계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사업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고 사업 전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규모의 계약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문화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